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27일, 이인선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소위
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2026.3.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2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3.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원
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인선의원)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

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수영)

이인선위원이 대표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

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항 중 “5명 이상”을 “3명 이상”으로 한다.

제17조의8제1항 중 “관세법인”을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사원 등) ① ~ ③ (생략)	제17조의3(사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u>5명 이상</u> 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④ ----- -- <u>3명 이상</u>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u>관세법인</u> 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u>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u>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